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15호
- 나. 발 의 자 : 황규복 의원(찬성자 17명)
-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인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의 기준 일부를 기존의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제3항제3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개정안(안 제32조)은 시장이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할 때 기존의 공연이나 전시 및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지원 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선하는 것임.
- 2021.1.5 「대통령령」(제31379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27개 법령이 일괄 개정되었음. 이는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음.
- 이 같은 대통령령 취지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시 인적·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실적 요건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실적’을 ‘능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정관, 고유번호증 사본,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32조에서는 시장이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인·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안번호
311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발 의	제 안 자 황규복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구로3)	제안일자 2022.3.10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21.1.5 개정) - 전문예술인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의 기준을 지원실적 중심에서 운영 능력 중심으로 개선(안 제32조 제3항 제3호)</p> <table border="1" data-bbox="347 891 1449 1126"> <thead> <tr> <th data-bbox="347 891 898 943">기존</th> <th data-bbox="898 891 1449 94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943 898 1126">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td> <td data-bbox="898 943 1449 1126">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능력</td> </tr> </tbody> </table>			기존	개정안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능력
기존	개정안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③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능력						
추진경과	○ '21.1.1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신은지(☎2133-2559)	담당	유상규(☎2133-2561)		